

2019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I 회의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 7. 25.(목) 16:00 ~ 18:15
- 장소: 호암교수회관(마로니에)

2. 참석현황

- 참석이사: 전수안(이사장), 권오규, 김형준, 남궁근, 박현애, 오세정, 여정성, 이준구, 정진성, 지은희, 최창원 (이상 11명)
- 불참이사: 구윤철, 박백범, 박용만, 홍기현 (이상 4명)
- 참석감사: 이병률
- 불참감사: 황성식
- 배석: 강준호(기획처장, 간사), 신석민(교무처장)

3. 회의안건

보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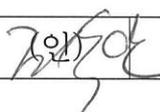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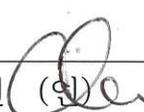
제1호. 정관 개정안 인가 관련

심의·의결사항

- 제1호.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
- 제2호.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3호. 서울대학교 AI위원회 설립 관련 규정 제·개정(안)
- 제4호. 서울대학교 감사 겸직 승인(안)

기타사항

- 제1호. 총장선출제도 개선 논의
- 제2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II 회의 내용

1. 개회

- 전수안 이사장이 성원을 확인한 후 오후 4시에 이사회 개회를 선언함
- 강준호 기획처장이 전차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하고, 전수안 이사장이 이사들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보고 사항

제1호. 정관 개정안 인가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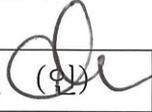
- 2019년 제3차 이사회(2019. 5. 29.)에서 심의·의결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가 일부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기획처장이 향후 절차 등을 보고함

3. 심의·의결 사항

제1호.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

□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 범위(제1조~제2조)
 - 교원의 징계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전임 교원, 인문한국(HK)교원, 기금교원 및 부설학교 교원에게 적용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징계의 종류(제3조)

-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정함
- 정직과 감봉의 경우, 기간의 범위를 각각 1개월~12개월로 넓게 규정함
- 정직 기간의 보수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
-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함

■ 징계의 사유(제4조)

- 정관에서 정한 징계 사유 및 교내 기관(연구진실성위원회, 인권센터, 감사팀)에서 조사하여 징계 요청한 경우

■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제5조)

- 부총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여성위원을 전체위원 중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

■ 의결정족수(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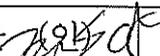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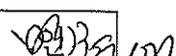
-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교원의 절차적 권리 등(제8조, 제9조, 제10조)

-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 출석 기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 피해자가 심의 절차관련 정보 및 심의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하고, 고지 내용은 공개 금지

■ 징계의결요구 등 절차(제7조, 제11조, 제12조)

-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고 총장은 의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징계의 양정 및 감경(제13조)

- [별표1]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하고, 훈장 등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고, 징계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는 감경할 수 없음

■ 감사원 조사 및 검찰·경찰 수사와의 관계 등(제14조)

-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검찰·경찰 수사개시 통보 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징계사유의 시효(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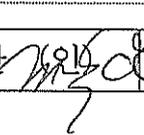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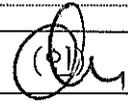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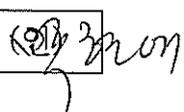
-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는 5년, 성관련 비위는 10년)

■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제16조~제17조)

- 징계위원회 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등은 비공개하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부여

□ 제정안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교원의 징계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에 따른 징계의 대상은 서울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인문한국(HK)교원, 기금교원 및 부설학교 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① 교원의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 정 안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정직기간의 보수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4조(징계의 사유 및 교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총장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정관,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 4. 연구진실성위원회, 인권센터, 감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청한 경우
- 5.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 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적용

제5조(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 본교 교원이 아닌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1명 이상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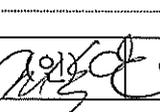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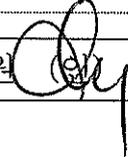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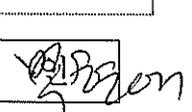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 1.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징계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 정 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① 징계의 양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의 양정을 제외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총장은 교원이 제4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 그 조사를 명하여 그 사안에 따라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피조사자가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③ 조사의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되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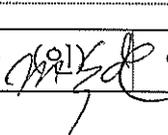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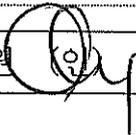
⑤ 총장은 교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인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총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원 징계의결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
3.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 규정, 지시문 등의 발췌문
8. 근무성적표, 포상 및 공적사항 등

⑦ 총장은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에 공문 발송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한다.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 정 안

제8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
2. 징계혐의자와 친족관계 또는 법률상 대리관계이거나 대리관계였던 경우
3.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척, 기피, 회피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수가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 되어 해당 징계사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총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출석통지에 갈음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인)	이사 최창원 (인)	이사 박현애 (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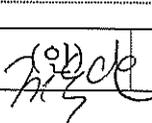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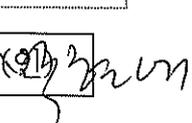
제 정 안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진술권과 심문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심의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 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혐의 내용과 관련한 피해자가 심의 절차 관련 정보 및 심의 결과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지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과를 고지받은 피해자는 그 고지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라 징계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2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결하되, 징계양정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 정 안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별지 제5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 양정 및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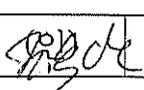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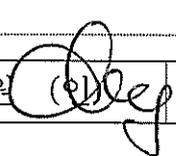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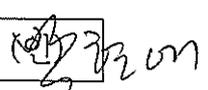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교사의 경우 장관 이상의 표창)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 이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
3.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교원 및 직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제7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8. 음주운전

④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총장 명의의 경고나 주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경고나 주의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전 징계대상자인 교원의 혐의가 징계의 사유에는 해당하나 견책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제 정 안

2.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가 제2항의 징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는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본교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본교가 수사 또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총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한 경우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를 한 경우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7. 학칙 및 제반 규정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제 정 안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본교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회의 등의 비공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 000호, 2019.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 대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수 전액” 을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봉월액 전액” 을 “1개월 부터 3개월까지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하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연봉월액의 80퍼센트를 감하고” 로 한다.

[별표 1]징계기준(제4조, 제7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2의1]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제4조, 제7조 및 제13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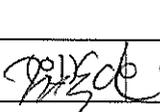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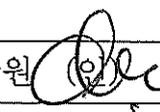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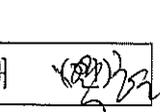
[별표 2의2]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호 위반 처벌기준

(제4조, 제7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3]음주운전 징계기준(제4조, 제7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4]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4조, 제7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5]징계양정 감경기준(제13조 관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교원 징계의결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출석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징계의결서
[별지 제5호 서식]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신석민 교무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2호. 서울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주요내용

-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위원 1명을 신규로 포함하고, 내부인사 위원으로서 교원 및 직원의 구성 수(교원 17명, 직원 2명)를 명시함
- 총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는 총장예비후보자의 수를 4명(※ 초빙 1명은 별도) 이내로 함
- 총장추천위원회의 정책평가 기능을 삭제함
- 정책평가단의 투표방식을 정책평가단 각 1인이 평가항목별로 후보자 한 사람을 투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시행세칙에 명시하였던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의 행동강령 준수 의무, 총장후보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명시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정책평가단의 투표방식에 대하여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2안 (평가항목별 한 사람 투표)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3호. 서울대학교 AI위원회 설립 관련 규정 제·개정(안)

□ 주요내용

-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울대학교 AI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AI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근거를 학칙에 반영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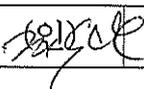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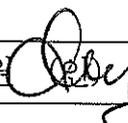
<AI위원회 설립(안) 개요>

□ 추진배경

- 지식과 기술혁신 중심의 새로운 경쟁체제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대한 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국가차원 전략 수립 절실
-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AI 마스터플랜 필요
 - 최고의 인공지능 인재, 기술, 시설이 집약된 집단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리드할 국가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필요

□ 설립 개요

- 명칭: 서울대학교 AI위원회(총장 직속 자문기구)
- 목적: 본교 AI 관련 정책·사업 추진 및 대정부 제언 등
- 구성: 다양한 분야의 교수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20명(위원장 포함) 이내
- 슬로건: AI for All(모든 학문, 연구, 산업주체의 자유로운 참여·교류)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 심의결과

- 오세정 총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제4호. 서울대학교 감사 겸직 승인(안)

□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이병률 상근감사에 대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겸직 승인

□ 심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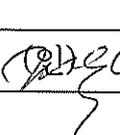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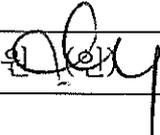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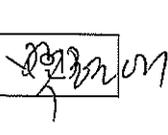
- 전수안 이사장이 위 안건을 발의하고 강준호 기획처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향후 감사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4. 기타 사항

제1호. 총장선출제도 개선 논의

□ 주요내용

- 이사회 의 최종총장후보자 선출방식 및 최종총장후보자 유고시 대응 방식에 대한 규정화 여부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간 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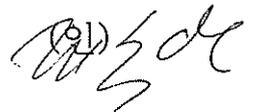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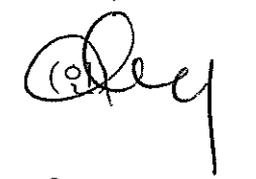
제2호. 다음 이사회 개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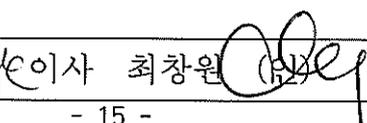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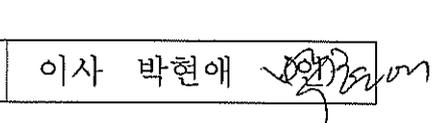
- 2019년 제5차 회의를 2019. 9. 26.(목)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함

5. 폐회

-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이사장이 오후 6시 15분에 폐회를 선언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간서명	이사장 전수안 	이사 최창원 	이사 박현애 
-----	---	---	--